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환경부에서는 그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5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화하게 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배경과 취지, 정책방향 등을 알아본다.

<편집부>

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배경

정부는 IMF사태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8. 8. 20 범정부 차원의「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 군산, 광양, 창원, 온산 등 5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2000말까지 민간에 이양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공기업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운영을 효율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유사·중복기능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선진기술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여 지정폐기물 처리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이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이 민영화 대상시설로 지정된 것은 매립대상 폐기물의 경우 민간에서 85%, 소각의 경우 99%를 처리하는 등 공공처리장 기능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및 민간과 공공기관간의 경쟁, 이에 따른 경쟁의 불공정성 등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존립 필요성이 감소되었거나 민간과 유사·중복기능 등으로 인하여 민영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17개부처에 133개 기관이며 환경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영화 과정은 선진국도 우리와 유사하게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 80년대 말 영국에서는 템스강 유역공사를 포함한 10개 유역공사의 환경기초시설을 일시에 민영화하여 274 개의 주식회사로 탈바꿈 한 것이 좋은 예이다. 현재는 당시 마가렛 대처 영국수상의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당시 지역주민 등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2. 민영화 추진경위

위 계획에 따라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0. 3. 27부터 10. 26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민영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민간의 환경의식과 폐기물처리능력향상, 환경산업육성의 필요성 등 사회여건 변화로 민간처리 위주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는 타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위 보고서의 결과와 정부의 민영화 방침 결정에 따라 공공처리장의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고, 2000. 11.10 제1차 매각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그간 3차에 걸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등록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현재는 제4차 매각 입찰공고가 실시된 상태다.

3. 향후 추진계획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계획에 따라 제4차 입찰은 지난달 실시되었으며 제4차 입찰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당초 가격에서 20%를 감액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제4차 입찰에서도 매각이 안 되는 처리장에 대하여는 공기업민영화 총괄 부처인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위탁 등 다른 형태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든 환경부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며, 가급적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와 지역주민민원을 수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4. 민영화 이후의 산업폐기물 관리강화 방향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이후 국가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업무를, 민간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

정폐기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업체간 기술경쟁을 통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처리장 부족으로 인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 하고자 공공 처리장 건설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본연의 기능인 지정폐기물 관리 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 환경부에서는 이제 공정한 틀과 룰이 마련될 것인 만큼 지정폐기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영화 이후 민간업체의 처리장 부실운영에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발생, 유통, 처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현재 용역 추진 중)하여 폐기물처리증명제(manifest system)를 전산화함으로써 폐기물이 발생에서 부터 최종처리 단계까지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감시기구의 신설 운영을 검토 중이다.

한편 폐기물처리비도 현실화하여 적정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환경保全**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출 5종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
| | ㈜울산정류장 | 이종학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1-1 | 한성택스타일쥬얼링공정 | 도충철 | 경남 양산시 부북면 전사포리 56 |
| | 웅천농협인해석동 | 박정도 | 경남 진해시 죽곡동 184 | ㈜한국대리석 | 서7선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2 |
| | 유니온테크㈜ | 윤석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706 | 성진산업 | 임철수 | 경남 함안군 아로면 하반리 308 |
| | 일양산업㈜ | 구자겸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49 | ㈜한진 울산지점 | 김인진 |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동 199-4 |
| | 한국금속공업㈜ | 류창록 | 울산광역시 유산동 331 | ㈜금성고분자화학 | 서규식 | 경남 양산시 호계동 857-11 |
| | 한국산업㈜ | 반도정리 |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17 | 삼우정공 | 이상구 | 경남 양산시 신막동 307-2 |
| | 한국T&W자동차부품산업㈜ | 양근모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22-1 | 현대엔지니어링 | 김영국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219 |
| | 한양식물원 | 강건오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46-2 | 고려공업공사㈜ | 김민호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82-12 |
| | 경남산업㈜ | 박광숙 | 경남 창원시 북면 무등리 산2 | 대우블록 | 정영호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273-2 |
| | 문성전지(㈜)상원공장 | 김현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44-4 | ㈜엔씨씨 | 김정영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529-18 |
| | 주원특수공업 | 성홍모 | 경남 진해시 남양동 362-2 | 화성 | 김명훈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31-2 |